

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  
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  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  
조례등중개정조례안

제 1 조(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지방공업기정 또는 지방시설기정”을 “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”으로 하고, “지방전기기좌·지방기계기좌·지방화공기좌 또는 지방수도토목기좌”를 “지방전기사무관·지방기계사무관·지방화공사무관 또는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”로 하며, “지방시설부기감·지방공업부기감”을 “지방시설부이사관·지방공업부이사관”으로 하고, “지방기계기좌”를 “지방기계사무관으로”로 한다.

제 2 조(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지방의무부기감”을 “지방의무부이사관”으로 한다.

제 3 조(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설치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화공기좌”를 “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”로 한다.

제 4 조(서울특별시중합건설본부설치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중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“지방토목기좌”를 “지방토목사무관으로”로 한다.

제 5 조(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지방시설기정”을 “지방시설서

기관”으로 한다.

제 6 조(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지방시설부기감·지방공업부기감”을 “지방시설부이사관·지방공업부이사관”으로 하고, “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화공기좌”를 “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”로 한다.

제 7 조(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지방기계기좌”를 “지방기계사무관으로”로 한다.

제 8 조(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지방시설기정·지방공업기정·지방환경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”을 “지방시설서기관·지방공업서기관·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”으로 하고, “지방토목기좌·지방기계기좌·지방전기기좌·지방화공기좌·지방환경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”를 “지방토목사무관·지방기계사무관·지방전기사무관·지방화공사무관·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○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을 審査하겠습니다.

議事日程 第5項에 대해서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.

金委員님, 發言하십시오.

○ 金炯奎委員 委員이 100人에서 120人 이내 委員으로 構成한다 그랬는데 20人이 增員되는 事由가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

○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양해해 주시면 우리 技術審査官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